



정보공개서

농업회사법인(주)인건 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청국장과 보리밥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2012010013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2.04.02.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7.04.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사업본부

주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홈페이지	www.ikfood.com
대표번호	1599-6399	외식사업부	070-8670-7220
팩스번호	031-629-5340	이메일	inkunfood@gmail.com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1.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 가맹사업의 연혁	
3. 가맹사업의 업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6.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 활동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3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4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6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의 주체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38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 별첨서류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별첨2] 판매상품리스트/ 강제권장 품목리스트 / 주요품목 공급가격

[별첨3]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별첨4] 인근가맹점현황문서

[별첨5]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농업회사법인 (주)인건	청국장과 보리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12.10	2009.12.24	오기성	1599-6399	031-629-5340
	법인등록번호	134211-0107220	사업자등록번호	126-86-2670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오기성	청국장과 보리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기성	1599-6399	031-629-5340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이사	이근구	청국장과 보리밥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오기성	1599-6399	031-629-534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청국장과 보리밥	친환경 청국장 및 보리밥 외식업체
상 호	청국장과 보리밥 00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4103609860000 등록일자(2016.05.31)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3년	4,828,736	2,730,160	2,098,575	6,266,346	240,460	149,989
2022년	3,798,848	2,477,318	1,321,530	4,918,215	237,027	121,049
2021년	3,579,766	2,379,285	1,200,481	3,889,340	192,174	65,20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상기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임원	오기성	대표이사	2004.3.~2009.12.	건업리보리밥 운영	총괄
			2011.5.~현재	대표	CEO
관련임원	이근구	이사	1991.7.~2011.6	롯데마트 과장	총무, 매장관리
			2011.7.~현재	(주)인건 이사	유통담당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0	4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사업 외의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출원) 및 등록일자(출원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점포내외사용	등록 410360986(2016.05.31.)	오기성	2026.05.31. (2026.05.31.)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kipris.or.kr/>)

II

가맹본부의 [청국장과보리밥] 가맹사업현황

1. [청국장과보리밥]을 시작한 날: 2010년 02월 01일 (최초 운영)

2. [청국장과 보리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인건푸드시스템	청국장과 보리밥	오기성	2009.12.24. ~ 2013.9.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341-16
(주)인건푸드시스템	청국장과 보리밥	오기성	2013.09.02 ~ 2014. 7.21.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39
농업회사 법인(주)인건	청국장과 보리밥	오기성	2014.07.22. ~ 2017.09.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539
농업회사 법인(주)인건	청국장과 보리밥	오기성	2017.09.05. ~ 현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 당사가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 및 유통을 함에 따라 2014.7.22 자로 법인 명의를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3. [청국장과 보리밥] 업종

영업표시	업종	
청국장과 보리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보리밥, 보쌈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말 영업중인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3.12.31			2022.12.31			2021.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8	6	2	8	6	2	10	8	2
서울	5	4	1	5	4	1	6	5	1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3	2	1	3	2	1	4	3	1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3	6	-	-	-	-	6
2022	8	-	-	2	-	6
2021	11	-	-	3	-	8

6. [청국장과 보리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 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년)

[청국장과 보리밥]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 됩니다. 매출 기준 자료는 POS 매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천원)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6	724,695	19,325	1,935,711	55,306	98,840	4,492	산출: 6 개

서울	4	801,319	22,572	1,935,711	55,306	98,840	4,492	산출: 4 개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2	571,448	13,769	784,518	18,244	358,378	8,959	산출: 2 개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기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 작성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영업기간

당사의 직전연도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영업기간
2023	6개	3,903일(10년 8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직전 사업연도 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수단은 구분이 어려워 총액만 기재하였고 그 근거는 손익계산서상의 광고선전비입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20,101	(비공개)	-	
광고비	-	 (비공개)	120,101	(비공개)	-	
판촉비	-	 (비공개)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곤지암지점)	개인상품부 (프랜차이즈 에스크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곤지암리	1588-6399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농업회사법인(주)인건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없음

Ⅲ

가맹 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청국장보리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계약기간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사유로 계약이 해지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선금금의 성질을 갖는 가맹금 중 미경과 잔여계약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인기준
개점행사비	회사 지원				
합계	14,300				

※ 상기 가맹비는 가입 대가와 매뉴얼, 영업노하우 사용, 개설지원 대가입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물품 대금이 미변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금, 계약 미행에 따른 변제금,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이외 물류 관련하여 물품 보증금은 현재 당사의 외주 물류 공급 회사인 '한화호텔앤리조트(주)'에서 자체 비용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합계	17,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32㎡[40평]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66,000	1,65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완납 추가공사는 공사 후 7일 이내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3.3㎡(1평) 늘어날 때마다 1,650천원 추가부담
주방설비	협력업체	15,950	398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필수집기 등	협력업체	33,550	838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완납 추가공사는 공사 후 7일 이내 지급	공사 전 계약취소	의탁자, 집기자재, 전자제품 등

간판	협력업체	7,700	192	물품 공급 1일 이전	상품 미공급시	전면간판 1개, 돌출플렉스간판 1개 (3m)
	합계	123,200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 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한 외주 업체들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비해 유지 또는 새로운 업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 외부공사, 철거, 전기증설, 화장실, 닥트입상, 소방방염, 가스공사, 지방경비(서울, 경기 외 지역) 등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으로 220천원(부가세 포함)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3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권유 → 가맹점사업자 선정 ※ 점포선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점사업자부담입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보건증 소지자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 기준은 'V.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매월 신용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월 1.5 %	익월 5일	후불로 반환없음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아래 참조	통지 후 7일 이내	미 시행시 반환	시행	V.9. 광고 및 판촉 활동 참조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분담 등		미 시행시 반환	시행	기획비용:본부 제작비용:가맹점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10일 이전	없음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	간판 변경 후 7일 이내	없음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별도 견적	교체.보수 후 7일 이내	없음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 기기 등의 내구연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3,000	매월 말일	없음		매월 후불

※ 광고비 분담금의 선정기준

1. [산정방식] 정률제 (단, 상하한 금액 설정)
2. [부과대상] 월간 총 식자재 매입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분담금의 하한액 및 상한액] 2항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이면 10만원(하한액)을 , 또한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상한액)을 광고비 분담금으로 한다. 단, 신규개점, 폐점, 휴업·리뉴얼·이전의 경우에는 하기 Ⅲ-2에 따라 계상된 광고비 분담금에 대하여 최초(최종) 식자재 매입일을 기준으로 계산된 영업일수를 적용하여 일할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한다.
4. [금액의 절사] 3항에서 계산된 분담금에서 백 원 단위의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이하를 절사하여 천 원 단위로 최종 분담금을 산정한다.

※ 광고비 분담금의 청구와 부과 기준

1. 분담금은 광고 시행전 월말 기준으로 월 단위 매입액을 산정하며, 식자재 매입액을 근거로 계상하여 익월에 청구한다.
2. 부과기준
 - ① 신규개점 : 최종 식자재 매입액부터 계상하여 익월 청구
 - ② 폐 점 : 최종 식자재 매입액까지 계상하여 익월 청구
(단, 명세서 발송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말소 시 제외)
 - ③ 휴업/리뉴얼/이전 :
 [영업중지일 기준] 최종 식자재 매입액부터 계상하여 익월 청구
 [역업재개일 기준] 재개된 식자재 매입액부터 계상하여 익월 청구
 - ④ 양도양수 : 양도양수 해당 월 식자재 매입액을 계상하여 익월 청구
 [가맹계약서 제30조 제5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
 양도, 양수인의 총 식자재 매입액으로 계상하여 양수인 명의로 익월 청구
 [가맹계약서 제30조 제5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양도인의 식자재 매입액은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식자재 매입액은 양수인 명의로 익월청구
3. 부과 방식 :거래명세표에 '광고비' 항목으로 기재하며, 산정된 최종 분담금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청구한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산출불가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산출불가

- ▷ 당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자체제조공장을 통해 청국장을 직접 제조,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어 차액가맹금 산정이 불가하며 그 밖의 품목은 "별첨2 강제,권장, 차액가맹금수취여부"에서 공개한 바와 제3자의 물류지정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관계로 차액가맹금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사입 문제	회사 전용 상품류에 대해 사입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 매장 진열 및 장부상 구입 여부 조사	분기별 1회	문의: 외식사업부 (070-8678-7220)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문의: 경영지원부 (1599-6399)
조리 매뉴얼 준수 여부	메인 메뉴(청국장 등)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투입량등 조리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조리하는 지에 대해 주방 직원 확인, 원료 재고 및 투입량 등 조사	매월 수시	문의: 외식사업부 (070-8678-7220)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계약비	최초가맹비의 30% (이후 재계약시 면제)	재계약 만료 1개월전	재계약 취소시	소멸성 비용	
추가 교육비	1,650/인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지식재산권으로 지식전달시 소멸	추가교육 필요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동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와 계약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7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	계약서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과 매뉴얼 및 운영양식,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중요한 문서 등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지체 일(日) 당 일금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 손해금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18조 제3항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무 . 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38조
⑤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종료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공급된 원 . 부재료 등의 중에서 완전물을 가맹본부에 반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가맹본부는 공급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순번	품목 (단위)	공급 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2. 주요 품목 공급가격" 참고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본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청국장과 보리밥』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본 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매장내에서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계약 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등 소비자 외 제3자	※별첨[공급상품리스트]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인)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판매상품리스트] 참조	권장가격	변경시 공문 및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19.4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청국장, 보리밥 전문점	청국장과 보리밥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계약매장에서 반경 500m을 원칙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구역지도 첨부)

다만, 영업지역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대형쇼핑센터,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하는 경우의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및 합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 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신 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하며,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
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
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
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청국장과보리밥'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청국장과 보리밥』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
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상호)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일반소매점	찬들마루 등 5개점	청국장쌀과자/흑미쌀과자/ 전통강정	완제품 (규격차이) 판매
다른 가맹점	국사랑	유기농청국장(2kg)/청국장 쌀과자/전통강정	세부업종이 다름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홈페이지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판매	청국장과 보리밥	ikfood.com	유기농청국장/청국장쌀과자 등	온라인 완제품 판매
	네이버	sell.smartstore.naver.com	유기농청국장/청국장쌀과자 등	
	아트박스	www.poom.co.kr	유기농청국장/청국장쌀과자 등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전연도 말 기준 [청국장과 보리밥]영업표지로 국내에서 판매된 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6.13%	23.73%	0.08%	0.05%

비중이 기재된 채널은 국내 총 매출액에서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46.15%

오프라인 전용상품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 온라인 전용상품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청국장과 보리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 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 면허, 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법, 식자재 구입 및 관리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⑥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7조 제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압류, 가처분, 체납 처분을 받은 때 ② 제27조 [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28조 [광고, 판촉]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④ 제30조 [권리의 양도 및 사업자 명의변경]에 위반하여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⑤ 제31조 [경업의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⑥ 제36조 [영업중지 조치]에 의한 영업중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을"이 영업을 지속할 경우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또는 폐업처리한 후 [청국장과 보리밥]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⑨ 제40조 [영업비밀 엄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⑩ 가맹점사업자가 원·부재료, 교육비, 가맹비(가입비), 로열티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⑪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⑫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비율을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⑬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⑭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후 점포설비의 교체·개량·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⑮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공방법, 종류(메뉴 등), 판매방법, 서비스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운영하는 경우	38조 제1항

⑩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운영매뉴얼이나 세부운영규칙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가.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8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재개발 등 도시 계획으로 최초 계약시의 상권에 비해 급격히 상권이 확대되는 경우 ○ 신도시 개발로 신규 상권이 형성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 이외 상권의 급격한 변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조 3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기준과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자세가 있는 자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외식사업부 (1599-6399)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기준을 적용하며, 양도양수시 매장의 인테리어 등 설비 등 노후화로 양도양수, 신규 이미지가 미흡하여 매장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5일)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상속절차 참조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가맹계약 종료 후 2년 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청국장과 보리밥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청국장과 관련된 외식업 ○ 청국장 제품 유통 및 판매업 ○ 청국장 제품 유통 및 판매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외식사업부 (1599-6399)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청국장과 보리밥]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22:00 (12시간)	일요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매장특성상 휴무 운영 선택	문의: 외식사업부 (1599-639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평 기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4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장기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sv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본사 외식사업부	
친절도(5항목)	sv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1주일	"	
품질 관리(7항목)	sv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	
전용상품 사입 여부	sv 매장 방문 → 사용 제품 확인 → 사입여부 확인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1주일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농업회사법인(주)인건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평가표는 별도 제공함)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청국장과보리밥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 및 브랜드광고	광고비의 25%	광고비 7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광고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절차 진행 → 광고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 부담 광고비 확정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 및 브랜드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판촉행사	공동 판촉 활동	기획비용	가맹점에서 소요되는 판촉물의 제작비용 및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용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사전동의 또는 사전약정 실시 →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 선정하여 최종 부담액 확정	-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19조 (판촉)
5. "을"은 자신의 판단과 비용에 의한 지역 마케팅 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이 때 "을"은 그 행사의 목적, 내용 및 홍보물 일체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을"의 홍보내용이 "갑"의 경영방침 또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의 홍보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과 금전 지급 중 빠른 날로부터 7일 이내의 경우 위약금 **금 오백만원**, 그 이후의 경우 **금 일천만원**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금액 중 상계처리 후 반환되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해약 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위약금 외에 가맹점의 개점을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가 물품의 구입, 인테리어 및 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한 경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협력업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진행 정도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제2항, 제34조(자점매입)을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별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2항 제⑨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 당 위약별 **금 이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39조 제1항 제①호(계약의 종료와 조치)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 지체 일(日) 당 **금 삼십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제40조 제1항 및 제3항(비밀유지 의무)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존속기간 중 경업한 경우 동일영업은 위약별 **금 일억원**, 동종영업은 위약별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⑩ 가맹점사업자가 제31조 제1항(경업금지 의무)을 위반하여 본 계약 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이 사건 계약상 영업지역 내 경업한 경우 동일영업은 위약별 **금 오천만원**, 동종영업은 위약별 **금 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⑪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 가맹본부에 사전 통지한 뒤 합의 후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종료에 합의가 되었으나 별도의 합의기준이 약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가맹점사업자가 38조 제

1항·제2항 계약의 해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위약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한다)

잔여 가맹계약 월 수 X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0%

단,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운영기간 동안의 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1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은 월은 제외됨

- ⑫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⑬ 가맹점사업자가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경우 위약별로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⑭ 가맹점사업자가 제27조 제2항·제3항(상표 및 서비스표의 사용)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 **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⑮ 가맹점사업자가 제30조 제1항(권리의 양도 및 사업자 명의변경)을 위반한 경우 위약별 **금 오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32㎡[40평] 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7일 내외	149,487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29일(1일)	17,3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일~25일(3일)	132,187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2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자의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 환경개선 시 비용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 및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가맹점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 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 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 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 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 업에 현저한 지장 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 내건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의 비용. 단,가맹사업의 통일 성과 무관하게 가 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 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 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첨 부)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가맹 점사업자에게 지급 (단,가맹본부와가맹 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 년의 범위내에서분 할 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 맹본부 또는 가맹본 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 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 난 날부터 90일 이 내에 가맹본부 부담 액을 지급 <분할지급시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 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첨 부)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 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 영업양도 포함)되 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중 잔여기간 에 비례하는 부담 액은 지급하지 아 니하거나 이미 지 급한 경우에는 환 수 가능

			→3차에 걸쳐 가맹 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청구 일로부터 90일이내, 총부담액 의 30% 2차:1차 지급일로부 터 60일이내, 총부 담액의 30% 3차: 2차지급일로부 터 60일이내, 총부 담액의 40%)	
--	--	--	--	--

2. 판매 촉진 행사시 인력지운 등 내역

해당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 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	-	-	-	-	-

해당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청국장과 보리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음식 가공 POS 사용, 주문, 입금 정산 방법 재고관리, 원료 특성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매장관리 요령,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가맹점별 선택 후 2주일 이내	가맹점 평가시 지적되어 보수교육
재 교육	신제품, 매장관리	이론 및 실습교육 병행	재계약 체결 전 2주일 이내	
신메뉴 조리	신메뉴 출시시 조리 및 셋팅 방법 등	이론 및 실습	출시 전 1주일 이내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인,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	2인기준,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점별 200	선택적 이수
재 교육	2일	신규 교육의 50%	필수 이수
신메뉴 교육	1일	가맹본부 부담	필수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7조에 따라 지정 기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청담점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13 12층
2	경기	곤지암점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581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년 8개월	직영점 2곳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VAT 미포함)	비고
677,574 천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근거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외식사업부(1599-6399)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 (02-2023-4010)** 또는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6)**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www.ikfood.com]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첨 2] 판매상품리스트/ 강제권장 품목리스트 / 주요품목 공급가격

● 판매상품리스트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식사류	청국장과 보리밥 (청국장+보리밥+모듬나물+강된장)	12,000	변경시 공문 및 월별로 홈페이지에 공지	2023.4월 기준 변경시 별도 품목리스트 통보
	가마솥밥	14,000		
세트메뉴	3인세트 [청국장과 보리밥 3인분+삼겹수육2인분+(두루치기/떡갈비/ 낙지 1인분) 중 택1]	53,000		
	4인세트 [청국장과 보리밥 4인분+삼겹수육2인분+두루치기/떡갈비/ 낙지2인분) 중 택1]	69,000		
정식류	우렁쌈밥정식(두루치기)	22000		
	우렁쌈밥정식(청국장+우렁쌈장)	16000		
	청국장과 보리굴비 정식	25000		
	청국장과 삼겹수육 정식	18000		
	청국장과 낙지 정식	18000		
	청국장과 두루치기 정식	18000		
	청국장과 떡갈비 정식	17000		
	쌈추가	2000		
	우렁된장	5000		
	청국장추가	5000		

※ 위 메뉴 구성 및 권장판매가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강제권장 품목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 주요품목 공급가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별지3] 가맹금 예치신청서(가맹점사업자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농업회사법인(주)인건(청국장과보리밥)		
	성명(대표자) 오기성		
	주소(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새재길 205	전화번호 1599-6399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mm×297mm[백상지 80g/㎡]

[별지5]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희망자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가맹본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

-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확인서 (가맹본부 보관용)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성명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가맹희망자 주소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 서	제 공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제 공 장 소		
	제 공 방 법	☐ 직접전달	
	제 공 받 은 가 맹 희 망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가맹희망자 자필작성 수령사실 자필확인란	상기 본인은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받았습니다.		

*가맹본부 작성	가맹본부 담당자 (서명 또는 날인)
----------	------------------------